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일반공업지역 내 업무시설(사무실, 오피스텔)은 지식산업센터를 지원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,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공업지역 내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여건에 따라 오피스텔의 한시적 입지를 허용하고,

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중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169호, 2025. 12. 2. 공포)됨에 따라, 개정법과 동일 내용의 시행령 상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3 제1호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
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
따른 지식산업센터 또는 별표 13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
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공업지역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3 제1호
마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.

1.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일 것
2. 202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할 것
3.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

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가 적
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일 것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략) 1. 2. 삭제 3. <u>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 중 1</u> <u>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</u> <u>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</u> <u>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</u> 4. 삭제 ② 삭제 ③ (생략)	제13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09